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아파트(일반)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건승과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희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에 보내주신 고객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답하기 위해 성실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20.07.23.(목) 자로 1차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분양대금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안내

1. 신청일정 및 장소

대출은행	신청일시	장소	구비서류
국민은행 남산동지점	2020.07.02.(목) ~ 2020.07.04.(토) [09:00-16:00]	서한 포레스트 침산동 모델하우스 (대구시 북구 침산동 156-19)	은행안내문 참조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일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대출 조건 및 유의사항

가.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적용

중도금대출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 대출 예정이며, 고객님의 중도금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사에서 대납하고, 고객님의께서는 입주 전까지 해당금액을 당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고객님의께서 직접 대출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대출 보증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중도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대출 보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대출신청 시 보증신청을 함께 하셔야하며, 공급계약서 제9조④항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고객님의 신용이나 대출은행의 대출취급 약관 및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은 고객님의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납부일정

납부회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납부일	2020.07.23	2020.11.23	2021.04.23	2021.09.23	2022.01.24	2022.06.23

■ 기타 안내사항

가. 분양계약서 제10조(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의거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 시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같은 조항에 명기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분양사무소(☎053-762-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분양사무소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아파트 분양고객(일반분양자)을 위한 집단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대상

- 모집공고 상 계약금 전액(10%이상)을 완납한 수분양자 (1인 1호)

● 최대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최대 60% 범위 이내 (총 대출한도 470억원 소진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단, 「8.2부동산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2.16 주택안정화 대책」 관련 규제로 지역별/차주별 대출한도가 차등 또는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기간 : 2020.7.2(목) ~ 7.4(토) (09시~16시)

● 대출금리 : 「신잔액 COFIX」기준

(2020. 6. 12 현재)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최종금리(A+B)
6개월 변동	연 1.2%	연 1.05%p	연 2.25%

- 기준금리 : COFIX금리는 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됩니다.(<http://www.kfb.or.kr>)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현재의 기준금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만기일 2023.02.17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후취담보취득 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면제 (단, 준공전 타행대출로 대환 시 제외)

● 대출부대비용 대출실행일에 국민은행 본인 계좌에서 인출(대출 실행 전영업일 본인계좌 잔고유지)

구 분	내 용	비 고
주택보증서 보증료 ^{주)}	대출보증금액 X 보증료율 (일시납)	비용부담 : 차주
수입인지비용	5천만원 이하 : 면제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은행과 고객이 각 50% 부담

주) 세부사항은 해당 보증기관 참조 : 주택도시보증공사(<http://www.khug.or.kr>)

● 준비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 분양계약자, 공동명의자 전원 내점 원칙

구 분	내 용
계약자 기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계약서 원본 · 계약금납부영수증(완납)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원포함/주민등록번호표시/세대주와 관계표시) · 신분증 · 세대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1부 · 주민등록초본(성명/주민번호 변경사항 포함)1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각각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배우자와 세대분리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577-1000 FAX 요청) <p>*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p>
접수장소	· 서한 포레스트 침산동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19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아파트 분양고객(일반분양자)을 위한 집단 중도금대출 안내

● 준비서류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분	내용	
소득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년필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필수)
	소득입증 불가고객	· 국세청 사실증명원(직전년도 소득신고사실 없음) · 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신용카드사용확인서(연말정산 소득공제용) - 적립식 상품 가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월임대료 입금통장사본
자의여부확인서	해당 사업장의 시공주체, 시행(공)사 임직원이나 임직원의 피부양자인 경우	
당행계좌 확인서류	당행 차주 본인의 입출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확인 가능) : 접수장소에서 신규가능	

※ 심사과정 및 9.13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담당 영업점 안내

취급영업점	담당자 및 연락처
남산동지점	팀장 김송자 053-251-2323 팀원 송주현 053-251-2332



상품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 ▶ '17년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성(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①소득증빙자료제출 ②비거치식분할상환 ③스트레스DTI평가 ④DSR산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입주시점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안내장 발급일 이후에도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우대

대상	확인서류
저소득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별첨7) 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
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발급)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별첨7) 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모범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